

#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협력사 행동규범

2025.2

## 서문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은 상지상(上之上) 기업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같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FnC")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 및 경영시스템 5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FnC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해당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하위 협력사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FnC 또는 FnC가 지정한 전문 기관은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 시한과 수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협력사가 행동규범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와 일관된 관행을 채택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단, 본 규범이 해당 국가의 법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됩니다. 또한 본 규범은 정기적으로 관련 법규 및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사전에 FnC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사에 공지됩니다.

## 본문

### 1. 노동인권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계약직, 임시근로자, 인턴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 환경과 권리 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1)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노동 강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초과 근무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 후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협력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법적으로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고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근로 허가증이나 여권의 양도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2) 아동노동 금지 및 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사의 아동 근로자의 고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해당 법규에서 규정한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 연령보다 높은 미성년 근로자는 고용할 수 있지만,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에게 도덕적 혹은 건강상 유해하거나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위험공정 근무 포함)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용 사례가 발견되면, 협력사는 즉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미성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 3) 근로시간 준수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매 7일 중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법적 최저 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초과 근로 수당과 복리후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서면 또는 법에 따른 전자 문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고,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및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비인도적 대우나 위협이 없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방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6) 차별금지

협력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등의 고용 관행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민족성, 장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임신,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이나 작업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나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2. 안전보건

협력사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 전반에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하위 협력사들과 협력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1) 법규 준수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 필수적인 안전 관련 인증과 인허가를 취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2) 산업 안전

협력사는 산업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단, 염료, 기타 화학약품 등으로 인한 위험이나 기계 부상, 화재, 감전, 추락 등의 안전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사전 예방 조치와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3)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미리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체계와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피 훈련, 탈출 경로 확보, 소화 장비 준비 등을 포함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4)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산업재해 및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며,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5) 설비안전 관리

협력사는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와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기계·기구·설비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유지하고, 경고 문구를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6) 작업장 등의 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깨끗한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보관 시설, 쾌적한 식사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며, 비상 출구, 온수 공급

목욕시설, 적절한 조명·환기, 개인 보관 공간, 출입 통제 장치를 갖춘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7)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3. 환경보호**

협력사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관리해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환경 법규 준수**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 등)를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내 물질에 대한 정보 표시, 특정 물질 사용의 금지 및 제한 등과 관련된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2)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오염원의 배출은 최소화 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의 효율을 높이며, 원료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실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3)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식별 표기, 라벨링 등을 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이러한 물질을 별도로 관리하며, 제품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원·부자재를 선정해야 합니다.

#### **4) 폐기물 및 폐수관리**

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관련 법규와 규정상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5) 대기오염관리**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 물질,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현황은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합니다.

#### **6)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4. 윤리경영**

협력사는 사업장 운영에 있어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공정거래**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 청렴성 및 부당이익 금지

모든 사업 상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자금세탁, 사기, 부적절 하고 부당한 이익 수령 및 횡령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자율적 윤리 준수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 3)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 법률과 규정,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 4)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지식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FnC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 없이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탈취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6) 합법적 물자관리

협력사는 분쟁지역 광물을 포함하여 불법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그러한 물질의 사용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사는 FnC의 요청 시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의 원산지 및 공급선에 대한 보증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5.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이 규범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자체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자율준수 의지표명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협력사 전 작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성명서는 모든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 2)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

본 규범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인권, 노동, 산업안전보건, 환경, 윤리 등을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경영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 3) 리스크 관리

협력사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환경, 산업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하며, 파악된 위험을 통제 및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교육

협력사의 정책, 절차, 개선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 5) 임직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처리

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6) 문서와 기록**

기업 운영 상 보관되는 문서 및 기록의 작성, 유지는 외부 공시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 관리요건의 적합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야 하며, FnC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7) 참여 및 이행**

협력사는 자사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들과 함께 본 규범의 내용을 포함한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